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후, 과기환송심에서 동일한 형 선고가 가능할까요?

〈사건의 개요〉

2020년 A씨는 11월 서울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따라서 1, 2심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기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심 심리 중이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2월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과기환송에서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부분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말미의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을 변경하여 과기환송심 재판부에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기환송심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하게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고, A씨는 이에 재상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을 때, 환송 후 원심이 이전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일까요?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

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99조(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본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준용한다.

대법원의 판단

“... 위 법률조항의 문언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상소심은 원심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전제로 삼았던 사정이나 견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만이 상고에 의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